

의안번호	2207125
의 퇴 인	서범수의원
회 답 일	2025.2.17.
추계번호	24B6390

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1조의2 신설 (설립 등)	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·연구·기술개발 및 건설기계 에 대한 검사·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설 기계안전원(이하 “건설기계안전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함(제1 항)	의무규정
		건설기계안전원은 법인으로 하고,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(제2항)	의무규정
		건설기계안전원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분사무소, 교육원, 연구원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음(제3 항)	재량규정
2	안 제31조의3 신설 (사업)	건설기계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함 1. 건설기계의 형식승인·신고 등의 수탁업무 2. 건설기계 검사업무의 대행 3. 건설기계 사고조사·현장점검 업무의 대행 4.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조사·연구 및 기술 개발 5.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교육·홍보 6. 건설기계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7.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8.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정보관리체계 구 축·운영, 통계 작성·관리에 관한 업무 9.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·승인 받 은 업무 10. 그 밖에 건설기계안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업으로 건설기계안전원의 정관으로 정하 는 사업	의무규정
2	안 제31조의4 신설 (자금의 조달 등)	건설기계안전원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함 1. 제31조의3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2. 자산 운영 수익금 3.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 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)의 출연금· 보조금·융자금 또는 기부금 4. 그 밖의 수입금	의무규정
3	안 제31조의5 신설 (보조금 등)	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건설기계안전원의 사업수행에 필요 한 비용을 출연·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음	재량규정
4	안 제35조 (보고·검사· 조사 등)	제2항 ¹⁾ 에 따라 사고조사기관을 지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은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·감독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(제7항 신설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□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

III. 미첨부 사유

□ 개정안은 한국건설기계안전원²⁾의 설립,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포함)의 출연금·보조금·융자금 또는 기부금 등으로 조달할 수 있게 하여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개정안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³⁾을 승계한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, 안 제31조의3에 규정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의 사업 중 신규로 추진하거나 사업 규모가 확대되는 사업([표 1] 참고)을 정부의 출연금·보조금·융자금 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업무는 [참고자료 1]과 같으며, 법정검사의 경우 정부 재정 지원 없이 피검사자가 납부하는 검사비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
 -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최근 3년간 수지현황은 [참고자료 2]와 같음

1)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(사망 등 사고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)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고조사기관(이하 “사고조사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에 대한 조사·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.

2) 개정안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, 본 추계서에서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예산 및 현행사업을 검토함

3) 현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4종의 법정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, 매년 피검사자가 납부하는 검사비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어 정부 재정지원 사업은 없는 상황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사업주체, 사업내용, 수입원 비교

구분	개정 전	개정 후
사업주체	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	건설기계안전원
사업내용	- 건설기계 검사업무의 대행 및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에 관한 확인·점검 - 건설기계에 대한 형식승인·신고 업무 -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에 대한 사고조사 및 현장점검 업무의 대행 -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조사·연구 및 기술개발 -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교육·홍보 -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-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·운영, 통계 작성·관리에 관한 업무 -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·승인 받은 업무 - 그 밖에 건설기계안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건설기계안전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	- 건설기계 검사업무의 대행 및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에 관한 확인·점검 - 건설기계에 대한 형식승인·신고 업무 - 건설기계 사고조사 및 현장점검 업무의 대행 -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조사·연구 및 기술개발 -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교육·홍보 -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-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·운영, 통계 작성·관리에 관한 업무 -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·승인 받은 업무 - 그 밖에 건설기계안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건설기계안전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
수입원	-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	- 건설기계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-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- 자산 운영 수익금 -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포함한다)의 출연금·보조금·융자금 또는 기부금 - 그 밖의 수입금

자료: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제출자료(2025.2)

- 개정안에 따라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·보조금·융자금,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, 기부금 등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됨
- 그런데,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의 사업별 수입금과 정부 외의 자의 자금 등을 제외한 정부의 출연금, 보조금, 융자금 지급 범위와 내용은 안 제31조의3

에 따라 신규로 추진되거나 사업 규모가 확대되는 사업별로 상이할 것으로, 현시점에 사업별 지원계획, 내용 및 범위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안 제31조의3에 따라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정부의 출연금 등을 사용해서 신규사업을 수행하거나 기존 사업의 규모를 확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의 사업별 추계곤란 사유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음

- (건설기계 사고조사 및 현장점검에 관한 업무) 추가재정소요 추계를 위해서는 국가 정책적 판단에 따른 업무범위 및 수행방식 등에 대한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, 현 시점에서 사고조사 대상 건수, 사고규모, 사고규모별 조사 인원수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하여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(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조사·연구 및 기술 개발, 교육·홍보) 추가재정소요 추계를 위해서는 사업의 내용, 규모 및 방법 등이 구체화되어야 하며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(건설기계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) 추가재정소요 추계를 위해서는 건설기계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업범위, 대상자 선정 기준, 양성 및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며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부재하여 합리적으로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(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) 현 시점에서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부재하여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(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·운영, 통계 작성·관리에 관한 업무) 추가재정소요 추계를 위해서는 수집대상이 되는 정보의 목록 또는 범위, 수집·조사 방법, 자료 관리 및 제공 방법, 정보관리체계 구축·운영방법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, 현 시점에서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(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·승인 받은 업무) 현 시점에서 사업을 특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여 추가재정소요 추계에 한계가 있음

-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됨

III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 1]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요 업무현황⁴⁾

사업	사업설명
1. 건설기계 검사업무의 대행 및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에 관한 확인·점검	1-1. 건설기계 검사 →(개요)건설기계 26종에 대한 신규등록검사, 정기검사, 수시검사, 구조변경검사를 실시(타워크레인 등 국토교통부 지정 민간검사기관에서 수행) 1-2.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 확인·점검 →(개요)건설기계 27종 중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 안전관리원이 아닌 6개의 국토부 지정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(협회, 민간사 등)를 수행 – 따라서 검사대행자는 타워크레인 민간검사기관의 검사원을 말하며,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법적인 총괄기관으로 이들 민간검사대행자의 검사 이행점검 및 특별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음
2. 건설기계에 대한 형식승인·신고 업무	2. 건설기계 형식승인·신고 →(개요)제조·수입사가 제작·판매하려는 장비의 제원표, 시험 성적서 등을 제출하면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·통보
3. 건설기계 사고조사 및 현장 점검 업무의 대행	3. 사고조사 →(개요)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에 대한 사고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, 선진제도 조사 등을 진행
4.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	4-1. 기술개발 →(개요)검사의 정밀성제고 및 수치화된 검사기법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 – 현재 건설기계 매연측정기, 처짐·변위, 제동력측정기 등 개발 4-2. 연구개발 →(개요)건설현장 안전을 견인하기 위한 제도개선·기술혁신 연구 용역 수행 – ‘23년 전담부서 신설, 건설기계 검사 및 관리체계 고도화 관련 국가연구개발 수행 중(5개년, 총 235억원)
5.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교육·홍보	5-1. 교육 총괄관리 →(개요)현재 관리원은 ‘23.1월부터 교육사업은 중단하고, 민간 교육기관(9개)의 총괄관리 역할 수행준비(교육기관 품질관리, 교육 시스템 구축, 교재개발 등) 5-2. 홍보 →(개요)대국민 및 건설기계 조종사를 대상으로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미디어홍보, 안전캠페인 등 실시
6.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	6. 국제교류 →(개요)관리원은 ‘23년 캄보디아정부(공공사업교통부)와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위한 MOU체결(안전관리체계 전수, 중소기업 진출

4)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제출자료

사업	사업설명
	지원 등)
7.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·운영, 통계 작성·관리에 관한 업무	7. 정보의 수집 및 정보시스템 운영, 제공 →(개요)관리원은 건설기계 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검사등록현황 관리, 수검자 정보수집 관리, 검사결과 정보제공 등을 추진 중
8.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승인받은 업무	8.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 →(개요)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기계에 대한 “정기검사” 시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62조 및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실시
9. 그 밖에 건설기계안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건설기계안전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	9-1. 국토교통부장관 지정사업 →건설기계 검사, 형식승인·신고, 타워크레인 총괄기관 9-2. 기관 정관상 사업 →제1호~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이 정관에 포함

[참고자료 2] 2023~2025년 건설기계관리원 수지현황⁵⁾

□ 수지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'23년 예산 (A)	'24년 예산 (B)	증감 (B-A)	%
수입	합 계	26,150,000	27,822,535	1,672,535	6.4
	사업수입	21,873,000	23,819,535	1,946,535	8.9
	사업外 수입	127,000	157,000	30,000	23.6
	전기이월금	3,000,000	3,000,000	0	0.0
	국가R&D 사업	1,150,000	566,000	-584,000	-50.8
	유동자산 전입	-	280,000	280,000	순증
지출	합 계	26,150,000	27,822,535	1,672,535	6.4
	인건비	12,017,320	12,194,440	177,120	1.5
	사업비	7,458,980	9,196,575	1,737,595	23.3
	관리비	3,900,000	3,900,000	0	0.0
	예비비(목적)	400,000	700,000	300,000	75.0
	예비비(일반)	-	287,000	287,000	순증
	소 계	23,776,300	26,278,015	2,501,715	10.5
	유형자산 투자	1,056,100	610,500	-445,600	-42.2
	무형자산 투자	1,317,600	934,020	-383,580	-29.1
	소 계	2,373,700	1,544,520	-829,180	-34.9

자료: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'24년 예산 (A)	'25년 예산 (B)	증감 (B-A)	%
수입	합 계	27,822,535	26,450,000	-1,372,535	-4.9
	사업수입	23,819,535	23,098,600	-720,935	-3.0
	사업外 수입	157,000	351,400	194,400	123.8
	전기이월금	3,000,000	3,000,000	0	0.0
	국가R&D 사업	566,000	-	-566,000	미정
	유동자산 전입	280,000	-	-280,000	순감
지출	합 계	27,822,535	26,450,000	-1,372,535	-4.9
	인건비	12,194,440	12,879,400	684,960	5.6
	사업비	9,196,575	8,638,620	-557,955	-6.1
	관리비	3,900,000	3,772,250	-127,750	-3.3
	예비비(목적)	700,000	700,000	0	0.0
	예비비(일반)	287,000	-	287,000	순감
	소 계	26,278,015	25,990,270	-287,745	-1.1
	유형자산 투자	610,500	245,700	-364,800	-59.8
	무형자산 투자	934,020	214,030	-719,990	-77.1
	소 계	1,544,520	459,730	-1,084,790	-70.2

자료: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

5)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제출자료

□ 수입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'23년 수입 (A)	'24년 수입 (B)	%	증감 (B-A)	%
총수입		26,150,000	27,822,535	100.0	1,672,535	6.4
법정 검사	신규등록검사	190,000	164,000	83.7	-26,000	-13.7
	정기검사	18,800,000	21,146,000		2,346,000	12.5
	수시검사	23,000	16,000		-7,000	-30.4
	구조변경검사	2,500,000	1,961,000		-539,000	-21.6
	타워 확인검사	6,000	5,000		-1,000	-16.7
소 계		21,519,000	23,292,000		1,773,000	8.2
형식 승인 신고	TC 형식승인·변경	14,000	6,500	0.4	-7,500	-53.6
	형식신고	60,000	60,000		0	0.0
	형식변경	30,000	46,000		-14,000	53.3
	동일형식신고	9,000	8,500		-500	-5.6
소 계		113,000	121,000		8,000	7.1
법정 교육	TC 직무교육	6,000	9,000	0.67	3,000	50.0
수탁 사업	TC조종 경력자양성	-	176,535		176,535	순증
소 계		6,000	185,535		179,535	2,992.3
용역	기술·연구용역	235,000	221,000	15.2	-14,000	-6.0
국가 R&D	연구개발비	1,150,000	566,000		-584,000	-50.8
전입	전기 누적잉여금	3,000,000	3,000,000		0	0.0
	유동자산 전입	-	280,000		280,000	순증
사업외	임대·이자수입 등	127,000	157,000		30,000	23.6

자료: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'24년 수입 (A)	'25년 수입 (B)	%	증감 (B-A)	%
총수입		27,822,535	26,450,000	100.0	-1,372,535	-4.9
법정 검사	신규등록검사	164,000	245,000	86.2	81,000	49.4
	정기검사	21,146,000	20,211,660		-934,340	-4.4
	수시검사	16,000	17,713		1,713	10.7
	구조변경검사	1,961,000	2,325,375		364,375	18.6
	타워 확인검사	5,000	5,292		292	5.8
소 계		23,292,000	22,805,040		-486,960	-2.1
형식 승인 신고	TC 형식승인·변경	6,500	6,240	0.5	-260	-4.0
	형식신고	60,000	63,000		3,000	5.0
	형식변경	46,000	44,100		-1,900	-4.1
	동일형식신고	8,500	6,720		-1,780	-20.9
소 계		121,000	120,060		-940	-0.8
법정 교육	TC 직무교육	9,000	9,000	0.03	0	0.0
수탁 사업	TC조종 경력자양성	176,535	-		-176,535	미정
소 계		185,535	9,000		-176,535	-95.1
용역	기술·연구용역	221,000	164,500	13.3	-56,500	-25.6
국가 R&D	연구개발비	566,000	-		-566,000	미정
전입	전기 누적잉여금	3,000,000	3,000,000		0	0.0
	유동자산 전입	280,000	-		-280,000	순감
사업외	임대·이자수입 등	157,000	351,400		194,400	123.8

자료: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